	인증표시 사용 안내서	제·개정일자 (Date)	2025.12.01
		제·개정번호 (Rev.)	4

1. 일반사항

- 1.1. 인증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인증마크 사용 및 인증 사실을 언급 또는 홍보할 수 있습니다.
- 1.2. 인증에 대한 홍보, 인증표시, 인증마크 등의 사용은 조직이 획득한 인증규격, 사업장, 인증범위에 한하여 사용 가능하며, 인증유효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합니다. 만약 인증이 정지 혹은 취소된 경우, 인증에 대한 홍보, 인증서 및 인증마크의 사용을 중지하여야 합니다.
- 1.3. 인정마크 및 인증제도 마크의 오용은 인증의 취소사유가 될 수 있으므로 인증을 받은 자가 광고, 카탈로그 등에 인증표시를 잘못 사용하고 있음을 발견하는 경우 시정조치, 인증서 회수, 정정공고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
- 1.4. 인증기관 및/또는 인증시스템의 명예를 손상시켜 공공의 신뢰를 상실하게 하는 방식으로 인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.


2. 인증문구의 사용

- 2.1. 인증문구는 다음을 포함하여야 합니다.
 - 1) 인증된 고객의 식별 정보 (예: 브랜드나 회사명)
 - 2) 경영시스템 유형 (예: 부패방지, 규범준수) 및 해당하는 표준
 - 3) 인증서를 발행한 인증기관
- 2.2. “이 조직은 ISO 37301 규범준수경영시스템에 대한 적합성을 인증 받은 관리체계에 따라 법적 준수를 위한 내부통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.” 라는 명확한 진술을 포함하여 인증사실을 홍보할 수 있으나 제품에 인증마크를 직접 표시할 수 없습니다.
- 2.3. “세계 최초로 OO부문에서 ISO 37001 / 37301 인증을 획득하였음” 과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된 근거 없이 배타성을 띤 절대적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2.4. 인증획득에 대한 홍보는 인증사실에 대한 오해가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.

(비고 1) “OO 기업은 ISO 37301 인증을 취득함으로써 법률 위반의 위험이 없는 완전한 준법조직임을 인정받았음” 과 같이 ISO 37301 인증등록조직이 규범준수경영시스템을 수립·운영하고는 있으나 일부 부서의 리스크관리 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전사적 법적 무결성을 보장하는 것처럼 홍보하면 안됩니다.

(비고 2) 클라이언트는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다음 사항을 주장하여서는 안됩니다.

 - 1) 조직은 모든 컴플라이언스 의무사항을 충족시키고 있음
 - 2) 조직의 사업 활동이 완전히 합법적임

	인증표시 사용 안내서	제·개정일자 (Date)	2025.12.01
		제·개정번호 (Rev.)	4

3) 조직의 활동에 있어서 어떤 규칙도 위반하지 않음

4) 미래에 어떤 컴플라이언스 위반도 발생하지 않을 것임

- 2.5. "ISO 로부터 인증 받은", "ISO가 인증한", "ISO 인증", "ISO 인증서", "ISO 등록" 등의 불명확한 표현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2.6. 생산한 제품에 인증표시, 인증기관명, 인증규격, 인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며, 제품인증인 것처럼 오해되도록 홍보할 수 없습니다.
- 2.7. 인증범위가 축소되는 경우, 모든 홍보물을 수정하여야 합니다.
- 2.8. 인증범위 이외의 활동과 사업장에 적용됨을 암시하지 않아야 합니다.
- 2.9. 「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, 공정거래위원회의 「수상·인증 등의 표시·광고에 관한 심사지침」 예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합니다.

3. 인증서의 사용


- 3.1. 인증서는 인증 받은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하며, 인증등록조직에 의하여만 사용되어야 합니다.
- 3.2. 인증서는 복사하여 사용 가능하나 복사본인 경우, 복사본임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 사용하여야 합니다.

4. 인증마크의 사용

- 4.1. 인증마크는 한국컴플라이언스기준원(KIC) 마크(인증기관 마크)와 인정기관(KAB)의 마크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, 인증마크는 인증범위 내에서 인증유효기간 동안만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4.2. ISO (국제표준화기구)의 마크 및 IAF MLA 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4.3. 인증마크와 인정마크를 동시에 사용하기가 어려운 경우, 인증마크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것을 가능하나 인정마크만을 단독으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.
- 4.4. 인증표시는 원본을 확대 또는 축소하여 사용할 수 있으나 인정마크의 크기는 최소한 가로 15mm, 세로10mm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.
- 4.5. 인증마크는 원본 색상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불가피한 경우에는 흑백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.
- 4.6. 인증마크는 인정받은 분야와 관련이 있는 홍보물 등에 사용될 수 있으나 제품 또는 제품포장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하며,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.

1) 인증마크 사용이 가능한 경우

- ① 광고 또는 홍보물 : 산업분류상 인증기업의 제품으로 분류되지 않는 명판, 명함, 교재,

	인증표시 사용 안내서	제·개정일자 (Date)	2025.12.01
		제·개정번호 (Rev.)	4

편지지, 브로셔, 일반문서, 송장 등의 인쇄물 또는 제작물 또는 기타 광고 수단에는 인증마크 사용 가능


2) 인증마크 사용이 제한되는 경우

- ① 제품 : 제품에는 인증마크를 사용 불가. 이는 제품에 대한 적합성 표시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- ② 제품의 포장 : 제품의 안전 또는 유통의 편의성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포장으로 제품을 해체하거나 파손하지 않고 제거할 수 있는 제품의 포장에도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즉, 소비자가 직간접적으로 접하는 제품포장에는 인증문구는 사용될 수 있으나 인증마크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③ 동반되는 정보(accompanying information) : 분리하여 사용하거나 쉽게 떼어낼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,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 즉, 제품에 부착되는 유형 라벨 (type label)이나 식별판(identification plates) 및 제품설명서는 제품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- ④ 깃발, 건물, 차량, 거래 샘플 또는 기타 제품 적합성에 관한 진술서(예, 시험성적서, 교정성적서 또는 검사성적서 등)에는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5. 인증마크 사용 예시

- 5.1. 한국컴플라이언스기준원(KIC)로부터 품질, 환경, 비즈니스 연속성 및(또는) 안전보건 경영시스템을 인증 받은 조직은 다음에서 제시된 형태로 인증 마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5.2. 인증마크(KIC 마크)는 왼쪽에 위치하고, 인정마크(KAB 마크)는 오른쪽에 위치합니다.
- 5.3. 인증 받은 경영체제와 KAB 승인번호를 마크 아래쪽에 나란히 표기합니다.
- 5.4. 여러가지 규격을 인증 받은 경우, [그림3]과 같이 표기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.
- 5.5. 인증마크와 인정마크를 동시에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, [그림4]와 같이 인증마크만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하나 인정마크는 단독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.

[그림1] ISO 37001:2025 인증인 경우	[그림2] ISO 37301:2021 인증인 경우
  KOREA INSTITUTE FOR COMPLIANCE ISO 37001:2025 KAB-AC-21	  KOREA INSTITUTE FOR COMPLIANCE ISO 37301:2021 KAB-CC-15

	인증표시 사용 안내서	제·개정일자 (Date)	2025.12.01
		제·개정번호 (Rev.)	4

[그림3] 여러 규격 인증인 경우	[그림4] KAB 로고 없이 사용할 경우
 KOREA INSTITUTE FOR COMPLIANCE ISO 37001:2025 ISO 37301:2021	 KOREA ACCREDITATION BOARD 한국인증지정기구 KAB-AC-21 KAB-CC-15
 KOREA INSTITUTE FOR COMPLIANCE ISO 37001:2025 ISO 37301:2021	 KOREA INSTITUTE FOR COMPLIANCE ISO 37001:2025 ISO 37301:2021